



Governance Issue

10대 그룹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등재 현황과 시사점

20210824

김남은 팀장

nameun.kim@daishin.com

심형철 연구원

이정훈 보조연구원

최지수 보조연구원

1. 주요내용

- 상위 10대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는 총 736개社였으며,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11개社(1.5%)에 불과함
- 총수의 2세, 3세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3개社(0.4%)였으며,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55개社(7.5%)로 나타남

2. 시사점

I.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미등재는 소유와 경영 분리 노력의 결과인가?

-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족경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활동으로 긍정적인 해석도 있음
-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와 전문경영인 대비 월등한 보수수령은 소유와 경영 분리 노력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음

II. '책임경영' 측면에서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필요

- 그룹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 및 총수일가의 상당수는 '등기' 임원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책임경영'을 위해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이 필요

III. '연성규범'을 통한 '동일인'의 '대표회사' 내 사내이사 등재 권고

- 동일인(총수) 개념 자체가 그룹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임
- <모범규준> 등 연성규범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IV. 총수일가 중 2세, 3세의 '등기' 임원 등재는 경영승계 관점에서 의미 있음

- 경영승계는 그룹 전체의 경쟁력과 경영전략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주제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그 동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총수 2세, 3세의 '등기' 임원 등재는 경영승계라는 큰 그림의 방향을 판단하는 첫 시작으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음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5월, 2021년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71개(소속회사: 2,612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그룹)으로 지정·통지하였으며, 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이하, 총수)과 공시기업집단은 5월 중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경영 현황을 공시하였다.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여부는 당 연구소는 총수가 있는 그룹 중 상위 10대 그룹 소속 계열회사(736개社) 내 총수 및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등재 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편,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이며, '등기'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총수 및 총수일가의 등기 여부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 여부, 즉 '책임경영'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본 보고서 내 '등기' 임원 현황은 2020년 현황을 공시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기초함으로써, 2021년에 발생한 10대 그룹 내 지배구조 변경(LG그룹의 LX계열 분리 및 GS리테일과 GS홈쇼핑간 합병 등)은 2020년 이후의 사건이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10대 그룹 소속 총수일가의 임원 등재 현황

10대 그룹 계열회사: 736개社
총수 '등기' 임원: 11개社
총수일가 '등기' 임원: 55개社

상위 10대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는 총 736개社였으며,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11개社(1.5% 비중)에 불과했으며, 총수의 2세, 3세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3개社(0.4%비중),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55개社(7.5%)로 조사되었다.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기업집단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책임경영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특히 이러한 그룹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1. 10대 그룹 총수일가 등재비율 현황

(2021.05 기업집단현황공시 기준)

기업집단	동일인	계열회사(A)	'등기' 임원 등재			총수일가 등재비율 (B/AX100)
			총수	총수의 2세, 3세	총수일가(B)	
삼성그룹	이재용	59	0	0	1	1.7%
현대자동차그룹	정익선	53	3	0	10	18.9%
SK그룹	최태원	148	1	0	7	4.7%
LG그룹 ¹⁾	구광모	70	1	0	1	1.4%
롯데그룹	신동빈	86	5	0	6	7.0%
한화그룹	김승연	83	0	2	2	2.4%
GS그룹 ²⁾	허창수	80	1	0	18	22.5%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33	0	1	2	6.1%
신세계그룹	이명희	45	0	0	3	6.7%
CJ그룹	이재현	79	0	0	5	6.3%
10대 그룹 합계 ³⁾	-	736	11	3	55	7.5%
10대 그룹 평균 ³⁾	-	7.3	1.1	0.3	5.5	7.8%

자료: 한국ESG조연구소, 기업집단현황공시(2021)

1) 2021년에 발생한 LG그룹의 LX계열 분리는 2021년 중 사건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2) 2021년에 발생한 GS리테일과 GS홈쇼핑간 합병은 2021년 중 사건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3) 10대 그룹: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

참고. 30대 그룹 소속 총수일가의 임원 등재 현황

30대 그룹 계열회사: 1,464개社
 총수 '등기' 임원: 61개社
 총수일가 '등기' 임원: 201개社

상위 30대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는 총 1,464개社였으며,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61개社(4.2% 비중)에 불과했으며, 총수의 2세, 3세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45개社(3.1%비중),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201개社(13.7%)로 조사되었다.

10대 그룹의 통계보다 높은 '등기' 임원 등재비율은 11~30위 그룹의 계열회사가 10대 그룹의 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 수 기준으로 그 규모가 작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편입된 카카오그룹은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4개社에 불과하나 계열회사가 118개社인 것으로 조사되어 카카오 그룹을 30대 그룹 통계에서 제외시 10대 그룹과 30대 그룹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2. 30대 그룹 총수일가 등재비율 현황

(2021.05 기업집단현황공시 기준)

기업집단	동일인	계열회사(A)	'등기' 임원 등재			총수일가 등재비율 (B/AX100)
			총수	총수의 2세, 3세	총수일가	
10대 그룹 합계	-	736	11	3	55	7.5%
10대 그룹 평균	-	7.3	1.1	0.3	5.5	7.8%
한진	조원태	31	2	0	10	32.3%
두산	박정원	22	2	0	6	27.3%
LS	구자홍	58	1	0	13	22.4%
카카오	김범수	118	3	0	4	3.4%
DL	이준용	36	0	1	1	2.8%
미래에셋	박현주	38	0	0	0	0.0%
현대백화점	정지선	25	2	0	3	12.0%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0	1	1	3.7%
셀트리온	서정진	8	0	7	8	100.0%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0	2	0	2	6.7%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2	1	0	1	8.3%
네이버	이해진	45	0	0	1	2.2%
에이치디씨	정몽규	29	4	0	6	20.7%
효성	조현준	50	5	0	11	22.0%
영풍	장형진	27	5	3	7	25.9%
하림	김홍국	55	7	2	17	30.9%
케이씨씨	정몽진	18	1	0	10	55.6%
넥슨	김정주	18	1	0	1	5.6%
넷마블*	방준혁	23	2	0	3	13.0%
SM(삼라마이더스)	우오현	58	12	28	41	70.7%
30대 그룹 합계 ¹⁾	-	1,464	61	45	201	13.7%
30대 그룹 평균	-	48.8	2.0	1.5	6.7	18.1%

자료: 한국ESG연구소, 기업집단현황공시(2021)

1) 30대 그룹: 부영그룹은 그룹 내 30 계열회사가 비상장회사이므로 30대 그룹에서 제외함

10대 그룹별 이슈사항

10대 그룹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등재가 가장 높은 그룹은 GS그룹으로 80개 계열회사 중 18개사에 등재되어 있었고, 가장 낮은 비율은 LG그룹으로 70개 계열회사 중 1개사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수의 '등기' 임원 미등재 그룹
: 삼성그룹, 한화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

특히, 삼성그룹, 한화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은 총수가 그룹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계열회사 어느 곳에서도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수년째 무보수 경영중이며, 이는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하며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재용 회장의 무보수 경영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타그룹 사례에 비해 돋보인다.

한화그룹^{주1)}, 신세계그룹, CJ그룹은 총수의 '등기' 임원 미등재와 더불어 총수 및 총수일가의 일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함으로써, '등기' 임원의 법적 의무로부터 벗어나되 '미등기' 임원으로서 그룹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상 주요의사결정 권한과 그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우려가 있다.

표3. 10대 그룹 총수일가 등재 현황(1)

(2021.05 기업집단현황공시 기준)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기' 임원 등재		
		성명	직위	동일인과의 관계
삼성	호텔신라	이부진	대표이사	혈족2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의선	대표이사	동일인
	기아	정의선	사내이사	동일인
	현대모비스	정의선	대표이사	동일인
	이노션	정성이	사내이사	혈족2촌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대표이사	혈족4촌
	서울피엠피씨	정태영	기타비상무이사	인척2촌
	현대엔터프라이즈	정문선	대표이사	혈족4촌
	현대캐피탈	정태영	대표이사	인척2촌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이사	인척2촌
	현대커머셜	정태영	대표이사	인척2촌
SK	SK	최태원	대표이사	동일인
	SK가스	최창원	사내이사	혈족4촌
	SK네트웍스	최신원	대표이사	혈족4촌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대표이사	혈족4촌
	SK렌터카	최성환	기타비상무이사	혈족5촌
	SK매직	최성환	기타비상무이사	혈족5촌
LG	FSK L&S	정재현	사내이사	인척4촌
	LG	구광모	대표이사	동일인

자료: 한국ESG연구소, 기업집단현황공시(2021)

주1)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021년 2월 취업제한이 종료되어 회장('미등기' 임원)으로 복귀함

표4. 10대 그룹 총수일가 등재 현황(2)

(2021.05 기업집단현황공시 기준)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기' 임원 등재		
		성명	직위	동일인과의 관계
롯데	롯데지주	신동빈	대표이사	동일인
	롯데제과	신동빈	대표이사	동일인
	에프알엘코리아	신동빈	기타비상무이사	동일인
	롯데케미칼	신동빈	대표이사	동일인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신동빈	사내이사	동일인
	에스디제이	신동주	대표이사	혈족2촌
한화	한화솔루션	김동관	대표이사	혈족1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동관	사내이사	혈족1촌
GS	GS	허태수	대표이사	혈족2촌
	GS에너지	허용수	대표이사	혈족4촌
	GS파워	허서홍	기타비상무이사	혈족5촌
	GS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	혈족5촌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이사	혈족4촌
	GS건설	허창수	대표이사	동일인
	파르나호텔	허승조	기타비상무이사	혈족3촌
	GS네오텍	허철홍	감사	혈족3촌
	삼양통상	허남각	대표이사	혈족4촌
	삼양인태내셔널	허광수	대표이사	혈족4촌
	보현개발	허서홍	기타비상무이사	혈족5촌
	캠텍인태내셔널	허서홍	사내이사	혈족5촌
	옥산유통	허광수	사내이사	혈족4촌
	경원건설	허광수	대표이사	혈족4촌
	승산	허인영	대표이사	혈족4촌
	인아초프로덕션	허인영	대표이사	혈족4촌
	삼정건설	허남각	대표이사	혈족4촌
	프로케어	허지안	사내이사	혈족4촌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정기선	대표이사	혈족1촌
	에이치이에이	백종현	사내이사	인척1촌
신세계	신세계통보이	문성욱	대표이사	인척1촌
	조선평택앤리조트	정재은	사내이사	배우자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문성욱	대표이사	인척1촌
CJ	CJ	손경식	대표이사	혈족3촌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	혈족3촌
	CJ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이사	혈족2촌
	제이에이치투자	손주홍	대표이사	혈족4촌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이재환	대표이사	혈족2촌

자료: 한국ESG연구소, 기업집단현황공시(2021)

시사점

1.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미등재는 소유와 경영 분리 노력의 결과인가?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등재 여부만으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건전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등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아 왔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미등기' 임원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는 취하고 있어 경계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편, 과거 주인의식에 기반한 기업가정신이 뒷받침되어 총수일가의 가족경영체제가 기업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으나, 동시에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승계작업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가 지속적인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총수일가가 가족경영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미등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족경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고자하는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활동으로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총수일가의 자발적 '등기' 임원
미등재는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음

다만, 당 연구소가 지난 6월 1일에 발간한 보고서^{주2)}에 따르면, 그룹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상당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미등기' 임원이기에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음에도 '등기' 임원인 전문경영인보다 월등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오너경영으로부터 거리를 둬으로써 기업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판단컨대,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미등재는 소유와 경영 분리 노력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대목이다.

표4.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미등기 총수일가의 보수 현황

그룹명	기업명	총수일가(총수 포함)				전문경영인 ¹⁾		보수배수 (총수일가/전문경영인)
		성명	직책	등기여부	보수(백만원)	성명	보수(백만원)	
현대차	현대비엔지스틸	정문선	부사장	미등기	901	유홍종	535	1.7배
롯데	롯데쇼핑	신동빈	회장	미등기	1,313	강희태	894	1.5배
	롯데칠성음료	신동빈	회장	미등기	1,000	이영구	529	1.9배
SK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미등기	3,000	이석희	2,427	1.2배
	SK디앤디	최창원	부회장	미등기	1,464	함스테판윤성	1,420	1.0배
신세계	신세계	정유경	총괄사장	미등기	2,960	차정호	1,384	2.1배
	이마트	정재은	명예회장	미등기	2,693	강희석	2,092	1.3배
	이마트	이명희	회장	미등기	2,693	강희석	2,092	1.3배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	미등기	3,368	강희석	2,092	1.6배
CJ	CJ	이재현	회장	미등기	6,717	김흥기	2,009	3.3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	미등기	2,800	신현재	2,381	1.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	미등기	2,862	허민호	1,207	2.4배
	CJ ENM	이미경	부회장	미등기	2,976	허민호	1,207	2.5배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10대 그룹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현황과 시사점" (2021)

1) 총수일가, 고문 등을 제외한 등기임원 중 보수총액이 가장 높은 임원

주2) 대신경제연구소, "10대 그룹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현황과 시사점" (2021)

II. '책임경영' 측면에서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등재 필요

'등기' 임원은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정관」, 「이사회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상법 제399조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 연구소가 10대 그룹 총수일가의 '등기' 임원 등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대규모 지분투자 및 시설투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그룹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 및 총수일가의 상당수가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룹의 경영전략은 그룹 내 소속된 계열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의 경영환경 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동일인(총수)의 일가 또한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임원이 아닌, '등기' 임원으로 등재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권한과 의무를 일원화한다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책임경영'을 위해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필요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III. '연성규범'을 통한 '동일인'의 '대표회사' 사내이사 등재 권고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선정하고 동시에 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판단함에 있어 건강상태, 경영참여 가능성, 회사의 주요의사결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연인(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스-오일 등' 사례도 있으나, 당 연구소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집단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으로 한정함)을 지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총수에게 권한과 의무(매년 정확한 지정자료를 제출할 의무), 책임(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위반의 최종 책임)을 일원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일인(총수)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라면 경성규범인 법 및 규정을 통해 동일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다만,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문제와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주주총회의 고유권한과 주주의 권리 등을 고려했을 때 〈모범규준〉 등 연성규범에 권고사항으로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감독기관 및 평가기관은 동일인의 대표회사 등재 여부를 감독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범규준〉 등 연성규범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IV. 총수일가 중 2세, 3세의 '등기' 임원 등재는 경영승계 관점에서 의미 있음

총수 2세, 3세의 '등기' 임원 등재는 경영승계를 가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미 있음

그룹 경영에서 총수의 경영승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승계는 그룹 전체의 경쟁력과 향후 경영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주제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그 동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계열회사 내 총수의 2세, 3세의 '등기' 임원 등재는 책임경영 측면 뿐만 아니라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경영승계라는 큰 그림의 방향을 판단하는 첫 시작으로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주)한국ESG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 연구소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내용에 관하여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 등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이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